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03 발의연월일: 2024. 9. 5.

발 의 자:조정훈・인요한・유상범

정성국 · 최수진 · 김대식

김소희 · 김용태 · 박형수

서지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 거권이 부여됨.

그런데 미국·중국·일본 등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거주하는 해외 국가의 경우에는 외국인 영주권자 대상 투표권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상호주의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어 정작 우리 국민의 의사 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국에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상대국의 국민에 대하여 선거 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과 상호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 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선거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 도래하는 선거부터 적용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선거권) ① (생 략)	제15조(선거권) ① (현행과 같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	2
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	
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	
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	
다.	<u>.</u>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3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	
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	
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u><단서 신설></u>	다만, 자국에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상대국의 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
	용으로 대한민국과 상호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한한다.